

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추가 안내

(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)

안녕하세요 교직원입니다.

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(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2의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))와 관련하여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 사항(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2의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)

1. 성범죄 경력 조회

- 대상자 :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
(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(단, 진로진학상담 제외))
- 별도의 신청서(동의서) 양식 없이 **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로 간주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 일괄 조회 (개인 제출 불가)**
- 단, 성범죄경력 조회 미동의시(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시)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됨
- 유의사항 :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될 수 있음

2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

- 대상자 :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
(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(단, 진로진학상담 제외))
- **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“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” 1부(원본)를 포함하여 제출(발급 원본 미제출시 불인정[사진촬영,PDF파일,메일 발송 등 불가])**

가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검사 절차

1) 검진방법

: 의료기관 개별 검사 → (2~3일 후) 의료기관 재방문하여 “검사결과통보서” 발급/제출
(의료기관에 따라 검사 비용 및 결과통보서 발급기간 상이)

검사내용	결과	내용	비고
검사 (TBPE, 4대 마약 시약검사)	음성	검사결과통보서 발급 후 제출 (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)	- 의료기관 방문 수령
	양성	2차 검사(재검사) 또는 의사 상담 후, 진단서 발급 후 제출(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)	- 의료기관 방문 수령 -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 우, '양성' 반응 우려가 있어 의 사 진단서 추가 제출 (결과통보서+진단서) - 진단서에 의사 상담내용 기재 필요→“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”

2) 서류 유효기간 :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 까지 검진·발급
된 서류 까지 인정

※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

3) 검진기관 : 건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가정의학과, 내과 등(병원 사전 확인 필요)

4) 유의사항 : 검사 결과 “양성”일 경우(치료용 제외)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될 수 있음